

김춘환

2025 변리사(핵심 강의)



민사소송법

□ 강사 소개

1. 약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 통합과정(Ph.D, 민사법 전공) 수료
現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교육원 직무강사(근로감독관 대상, 민법)
現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김인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학과 교수), 중앙법학회 이사
現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인천대학교 법학과,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특강 강사
現 월비스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무사 민법 전임교수
現 해커스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강사
現 공단기 민사소송법 대표 강사

2. 저서

Fortune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11판(2024), 학연 刊
Fortune 完打 민소법의 종결 (2024), ACL 刊
해커스 노무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2025), 해커스 刊
해커스 감정평가사 민법(2025), 해커스 刊
Fortune 완타 민법(2025), 학연 刊

□ 강의 일정 및 교재

1. 강의일정

: 10/27(월) ~ 11/13(목), 14회, 화,목,금:오후(14:00 ~ 17:30) / 월,수 :오후(18:30 ~ 22:00)

2. 강의교재

: 수험 민사소송법의 이해(학연, 2025 新刊) + 참고 자료(제공) +변리사 법전

□ 강의 내용 및 특징

1. 민사소송법 전공자에 의한, 민소법 고득점을 위한 기초강의

2. 민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 이론(학설, 판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여, 법학적 답안지를

현출하게 함.

3. 강의 진행 후, 과외 식으로 강사 직접 상담·채점에 의한 Feed back 형성(답안지 및 강의, 개인 상담 실시)

□ 변리사 민사소송법 小考(소고)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절차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변리사가 심결취소소송에서 변호사보다 훨씬 더 많은 소송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¹⁾²⁾, 기본적인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도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의 강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법과대학 시절부터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실무과목이라는 이유 등으로 강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고(현행 로스쿨 체제에서는 더 심각해 보입니다), 또 소송법은 어렵다는 막연한 선입견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과목이라는 생각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 과목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실한 개념 정립, 무엇보다 민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그리 어려운 과목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의 출제 경향 및 공부방법

2025년을 기준으로 62회가 출제되었으므로, 기출문제들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들과는 달리, 소위 찍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쟁점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험가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강사가 어떤 문제를 찍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는 허황된 소문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법에 대한 탄탄한 기초 위에서 중요주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 및 답안지에 대한 현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 논리전개 내지 논증의 틀(폼)

(1) 이하의 내용은 제 대학원 지도교수님³⁾의 글이니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강의를 들을 때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2)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는 문제에서 1.의의 2.취지, 근거, 법적 성질, 기능 3. 요건 4. 효과 식의 정형적인 폼이 있듯이, 사례문제에서도 그 사례문제의 성질에 따라 몇 가지의 폼을 미리 만들어 두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예:

1. 문제의 분석(문제점의 추출⇒논점의 문제제기, 문제의 소재)
2. 논점 전개
 - (1) 정의, 원칙, 예외(수정), 규범
 - (2) 문제로부터 요건정립, 취지, 논점의 결론, 반대설, 반대설 비판
 - (3) 전제, 이론적 귀결, 부당성 지적, 규범, 허용성, 특수성
3. 사안 적용 - 삼단논법의 귀결

1)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4>

2) 특허법원에서 공지된 판결 10건 정도를 확인하여 보면 변리사가 대리한 사건이 6건,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2건, 변호사와 변리사가 양측 당사자에 각각 선임된 사건이 2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이 아닌 명수로 계산하면 그 사건 10건을 31명의 변리사, 6명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 2022.12.9. 및 12월 12일 작성된 판결 10건 : 2021허6764, 2022허2233, 2022허1858, 2021허5594, 2021허6795, 2021허4461, 2022허2455, 2022허1667, 2021허5242, 2021허3987

3) 김○○, P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제43회·제48회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4. 공부방법상의 유의점

- (1) 제도나 논점에 대해 왜(WHY?)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취지 등에 대하여 생각한다.
- (2) 유사한 제도나 논점의 상호 비교, 구별 표지 정확하게 이해, 아이덴티티 확립
- (3) 제도나 논점의 골격을 먼저 기억하고, 거기에 공부가 더해 감에 따라 살을 붙혀 나감
- (4) KEY WORD 중심의 공부(다만 답안지에 KEY WORD만 쓰면 절대 안 됨)
- (5) 논점의 학설 이름, 개수 정확하게 기억
- (6) 判例 태도 정확하게 기억(우리 판례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 (7)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 하지 말고(다침!!!)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8) 모든 공부는 결국 시험장에서의 답안작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평소 답안작성연습을 꾸준히 하고, 책을 읽어 나갈 때에도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을 찾는 방식으로 공부하고(효율적인 마킹), 결과물을 간결하게 머리 속에 정리하여 두고, 자주 되새김질을 한다.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 민소법, cafe.daum.net/chunzivilprozess

□ 주의 사항

- (1) 개강 일에 변리사 시험용 **법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진도별 강의 내용

회수	일시	page	중요쟁점
제1회	10/27(월)		오리엔테이션, 민사소송절차 개요 및 중요 조문 해설, 변리사 시험 분석
제2회	10/28(화)	~ 78	1. 소송과 비송의 한계-과거의 양육비 청구 2. 민사소송과 신의칙 -신의칙 위반의 행위에 대한 판단(辨 34) 3.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의 인정여부 4.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관한 치유여부(辨 39) 5. 관할 -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합의관할(勞 10회), 변론관할, 司 34, 50, 55, 勞 11회) 6. 이송결정의 구속력(司 41)
제3회	10/29(수)	~ 98	7. 당사자 확정[사망자당사자소송(辨 40, 司 50, 54, 法 15, 勞 11회), 법인 격부인] 8. 당사자능력(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司 50) 9. 당사자적격[이행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司 46,47, 法 13),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司 54), 제3자 소송담당(勞 1)과 채권자대위소송(司 39,41,43,48,53,54)] 10. 소송능력(소송무능력과 흠결시의 법원의 조치)(辨 44)

제4회	10/30(목)	~ 120	11.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司 40) * 파기환송 후 소송대리권의 당연부활 여부 - 심급대리원칙, 파기환송판결의 성질(司 37) 12. 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무권대리인(司 55) 13.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제5회	10/31(금)	~ 142	14.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의 선순위성(司 54) 15.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司 43, 48, 法 14) 16.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상적격, 즉시확정의 이익(法 13) 17.소송물이론-내용, 식별기준, 상대성인정여부(司 28, 41, 51, 53, 54) *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무변론판결(司 45, 57)
제6회	11/3(월)	~ 179	18.중복소제기의 금지-상계의 항변(辨 46, 司 53), 채권자대위소송(司 43, 54 法 12), 채권자취소소송(法 16) 19.중복소제기의 금지-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辨 42) 20.소제기의 실제법상 효과-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중단 21.공개심리주의 - 영업상, 사생활의 비밀(司 53) 22.처분권주의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 형식적 형성의 소(司 44, 56, 辨 44) 23.채무부존재확인 소와 처분권주의(辨 44) 24.처분권주의-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司 45, 49) 25.처분권주의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辨 41) 26.변론주의에서의 사실의 주장책임[간접적 주장인정여부(司 44, 5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司 47, 勞 10회),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 여부(司 51, 57), 석명권(勞 11회)] 27.지적의무(시사의무)- 석명권과의 관계(司 51)
제7회	11/4(화)	~ 203	* 적시제출주의, 이익권 *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28.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 - 부인과 항변의 구별(司 42, 48, 57) 29.소송에 있어 형성권의 행사 - 소송상 상계의 항변(辨 46) 30.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의 성질(辨 45, 司 56) 31.소송행위의 하자과 그 취소 여부(辨 40, 司 51) 32.변론기일에 있어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司 45, 47, 57, 法 13) 33.무변론판결(司 45)
제8회	11/5(수)	~ 268	* 추후보완제도, 송달(司 55) 34.소송절차의 중단-당연승계의 인정과 수계절차의 의미(司 54, 56) 35.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력(司 37) 36.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司 50, 53), 현저한 사실 *유일한 증거(辨 47) 37.서증 - 문서의 증거력의 추정(司 50, 52, 勞 9), 서면증언의 특례(司 46) * 증인에 대한 감치제도의 신설 38.문서제출명령(司 47) 39.당사자신문 - 보충성의 폐지 * 증거보전(辨 46)
제9회	11/6(목)	~ 308	40.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 41. 자유심증주의(勞 1)-증명방해(입증방해)의 문제 42.증명책임의 분배와 완화(司 45) 43.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복멸(辨 39) 44.소송종료선언(司 43) 45.재소금지- 당사자동일((司 48), 소송물 동일의 문제 46.재소금지-소의 교환적 변경과의 관계(司 52) 47.소송상 화해의 효력-기관력의 제한적 인정여부(司 39) 48.화해권고결정

제10회	11/7(금)	~ 365	* 판결의 의의 및 종류, 기속력(판결의 경정), 형식적 확정력 49.변론종결(표준시)뒤의 형성권의 행사(司 49, 勞 10회) 50.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기판력의 시적한계(司 43, 49) 51.변론종결전의 법률관계-기판력의 표준시 52.기판력의 작용-선결관계(司 52)와 모순관계 53.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속력 인정여부(辨 43, 司 52) 5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辨 39) 55.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의 비교(辨 38, 司 56) 56.판결의 반사효의 인정여부 57.판결의 무효-상소의 대상적격 58.판결의 편취-소송법상 구체책(司 40, 55) 59.판결의 편취-집행시의 구체책과 실체법상 구체책(司 40) * 가집행선고, 소송비용
제11회	11/10(월)	~ 386	60.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성질(辨 43) * 선택적 병합 - 판결이유가 다른 경우의 항소심법원의 판단(辨 46) 61.예비적 병합 - 양립불가능성의 요건여부(辨 46) 62.예비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허부(司 46, 辨 46) * 예비적 병합과 불이익변경의 원칙(司 51회) 63.청구기초의 동일성의 개념 64.교환적 변경의 경우의 피고의 동의여부 65.청구의 변경의 간과-법원의 처리방법 66.중간확인인 소-선결성의 요건의 의미 67.항소심에서의 반소-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司 46) 68.반소요건 등의 조사 - 반소요건의 흠결시의 조치
제12회	11/11(화)	~ 403	69.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장·증거공동, 주장공통의 원칙 인정여부(司 38, 45, 47, 53, 56, 勞 1) 70.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통상공동소송의 판단기준(司 38, 45, 47, 52, 57, 勞 11회) 71.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개정전의 상황과 현재의 규정(司 46, 49, 53, 55) 72.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여부(司 49, 57) 73.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74.선정당사자-심급을 한정된 선정의 인정여부 75.선정당사자-선정 후의 선정자의 지위
제13회	11/12(수)	~ 431	76.보조참가-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보조참가의 이익)의 의미(辨 45) 77.보조참가-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한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78.보조참가-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의 성질(司 50) * 공동소송참가(勞 10회)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司 48) 79.소송고지-소송고지의 효과(司 51, 勞 9) 80.독립당사자참가-이중매매의 경우에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여부 81.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권리침해'의 의미 82.독립당사자참가-판결에 대한 상소의 문제(司 50) 83.임의적 당사자 변경 - 일반적 허용여부와 법적성질(司 51) * 소송승계(당연승계, 특정승계- 참가승계, 인수승계, 司 56)
제14회	11/13(목)	~ 484	84.상소권포기의 가능여부 85.불상소의 합의-직권조사사항여부 86.상소의 이익-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司 44) 87.상소불가분의 원칙(司 51, 57) 88.항소의 취하-소 취하와의 비교(司 51) 89.부대항소-부대항소의 성질(司 51) 90.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司 51) 91.환송판결의 기속력(司 42, 55)

			*특별항고(法 11) 92.재심의 소-법 제451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93.재심의 소에 있어 중간판결 94. 간이소송절차(소액사건, 독촉절차) 95. 공시최고절차
--	--	--	--